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58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윤건영・박지원・이기헌

신정훈 · 김영배 · 양부남

한병도 • 위성락 • 김주영

모경종 • 노종면 • 김영진

문진석 · 강훈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면 행정절차의 근거 또는 기준 등이 변경되어 대부분 국민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부 행정기관이 소관 행정규칙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개정 여부를 비공개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소관 행정기관이 법령등의 제명 자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규정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법령등의 규율을 받게 됨.

주요내용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 • 개정 •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법령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제명은 공개하도록개정하고자 함(제3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의 제명은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2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		
	<u>다.</u>		
<u><신 설></u>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		
	로서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		
	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등의 제명은 공개하여야 한		
	<u>다.</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